

의안번호	2211359
의 퇴 인	김상훈 의원
회 답 일	2025. 7. 17.
추 계 번 호	25F369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등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경우, 법인세는 2027년 307억 원, 2029년 307억 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921억원(연평균 307억 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등 (안 제8조의3제1항)	-307	-307	-307	-921	-307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의3제1항 (상생협력을위한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)	○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 3년 연장 - (적용기한) 2025.12.31. → 2028.12.31. ○ 공제대상의 범위에 '무역보험기금에 출연'을 포함 - (현행) ① 협력중소기업의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출연 ②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 ③ 상생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④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원지원자금에 출연 → (개정안) ⑤ 무역보험기금에 출연 추가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8조의3제1항 (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이 2025년 중 통과되어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,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7년부터 발생
 - 2026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는 2027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
- 개정안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
 -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 추계시 향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규모가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
 - 동 세액공제의 최근 5년간 공제실적은 2020년 202억원에서 2023년 408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4년(잠정) 295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음
 -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공제대상에 추가하는 안의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 연평균 내국법인의 무역보험기금 출연규모가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2024년부터 시중은행과 무역보험공사 간 협약 등에 따라 기금 출연 은행 수가 확대되었으나 향후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워 최근 5년간 평균치를 사용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- (제도개요) 동 제도는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, 해당 출연금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
 - 동 제도의 공제대상, 공제율 및 적용기한은 다음과 같음
 - － 공제대상: 1.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,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
 - 2.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내국법인
 - 3. 상생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하는 내국법인
 - 4.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
 - － 공제율: 10%
 - － 적용기한: 2025.12.31.
 - 동 제도는 2010년 도입된 이래 세법개정을 통해 공제율 및 공제대상이 확대되는 추세

[표 2]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(안 제8조의3제1항)의 주요 연혁

시행연도	주요 개정내용
2011년	· 제도 도입 － 공제대상: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,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거나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내국법인 － 공제율: 7%
2017년	· 공제율 확대: 7% → 10%
2020년	· 공제대상 확대: 상생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하는 내국법인 포함
2022년	· 공제대상 확대: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 포함

- (감면실적)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의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실적은 다음과 같음
 -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실적은 2020년 202억원에서 2023년 408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, 2024년(잠정) 295억원으로 감소

[표 3]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실적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(잠정)	연평균 (‘20~’24년)
공제실적	202	212	329	408	295	290

자료: 대한민국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.

(2) 추계방법

□ (현행 규정 일몰연장에 따른 세수효과) 향후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(2020~2024년) 공제실적의 연평균 수준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추계

○ 향후 법인세 공제액은 최근 5년(2020~2024년)의 연평균 감면액인 290억원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정

□ (무역보험기금 출연 추가에 따른 세수효과) 최근 5년간 내국법인의 무역보험기금 출연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

○ 2020~2023년까지 1개 은행에서만 출연하다가, 2023년 말 5대 시중은행-무역보험공사 간 금융공급 업무협약에 따라 2024년부터 시중은행의 기금 출연액 증가

○ 다만, 향후의 추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내국법인의 무역보험기금 출연액은 최근 5년간 출연액의 평균치가 유지된다고 가정
-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연평균 무역보험기금 출연액: 170.4억원

[표 4] 내국법인의 무역보험기금 출연 내역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, 개)

구분	2020	2021	2022	2023	2024
무역보험기금 출연액	60	80	40	40	632
출연기관 수	1	1	1	1	5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제출

○ 개정안에 따른 경우, 내국법인의 무역보험기금 출연액의 10%를 법인세에서 추가 공제하게 되므로 출연액의 10% 규모의 추가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계

－ 출연액의 10% = 17.0억원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치: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7	2028	2029
합계	307	307	307
－일몰연장	290	290	290
－무보기금 출연금 추가	17	17	17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경우, 법인세는 2027년 307억 원, 2029년 307억 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921억원(연평균 307억 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등 (안 제8조의3제1항)	-307	-307	-307	-921	-307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장설희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836	shjang@assembly.go.kr